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법원 판례변경(문신행위 관련)에 따른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안내

1.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6.5.21. 선고, 2021도 15611) 관련입니다.
3. 대법원은 종전 판례('92.5.22. 선고, 91도3219 등)를 변경하여 문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판결요지) 문신은 질병의 예방·치료와 관련이 없고, 의료인 수준의 의학 지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도구·방법·절차 등에 대한 교육이나 규제 등을 통하여 감염이나 부작용의 최소화가 가능하고, 타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 등을 통해 통제할 수 있음. 따라서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문신은 장식적·예술적·미용적 목적의 행위로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시술자의 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및 피시술자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

4. 이에 우리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및 [별표7]의 '문신' 관련 부분은 규범적 근거를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미용업소에서 이루어지는 문신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적절하지 않음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관련 규정
 4. 미용업자
 - 가. 점빠기·긋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관련 규정
 - II. 개별기준
 4. 미용업
 - 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3) 점빠기·긋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
: (1차 위반) 영업정지 2월, (2차 위반)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5. 이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및 [별표7]의 '문신' 관련 규정에 의한 위반을 전제로 수사·재판 등 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규정을 문신행위에 대한 처벌의 근거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우리부의 입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공중위생관리법」의 동 조항과 관계 없이, 「문신사법」 시행('27.10.29.) 이후에는 문신사 면허 소지자만이 문신행위가 가능하므로, 문신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미용사가 문신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문신사법」에 따라 처벌 가능합니다.
6. 아울러, 우리 부는 문신사법 시행 전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문신기술 표준지침」을 발간·배포(7.31, 붙임 참조)하여, 문신업소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시설·도구 및 위생·감염관리 기준, 문신사법상 의무·금지사항 등을 안내하고, 지자체를 통해 현장에서 안전한 문신 기술이 이루어질 수 있게 계도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7.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및 [별표7]의 '문신' 관련 부분은 금년말 또는 내년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삭제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문신기술 표준지침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세청장, 소방청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교육부장관, 질병관리청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가데이터처장, 지식재산처장,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대한의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주무관 양지인 행정사무관 이신영 생활보건팀장 전결 2026. 8. 25. 박준형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팀-2283 (2026. 8. 25.)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3층 / <http://www.mw.go.kr>

전화번호 044-202-2854 팩스번호 044-202-3929 / jiny1218@korea.kr / 비공개(5)